

다. 「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·산정 업무요령」

□ 용어의 정의⁶⁾

- (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)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(냉·난방, 급수·배수, 방범, 방재[방화(防火)를 포함함], 전기, 조명 등)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(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. 이하 같음)에 의하여 자동관리·제어하는 시설을 말함
 - 다만, 사무자동화시설(OA)과 정보·통신시설(TC)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,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(예: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)을 제외함

라. 건축법

제65조의2(지능형건축물의 인증)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.(이하 생략)

마.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

제11조(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)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구분	적용대상	번호	지수	적용범위
(중략)				
II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텔리전트시스템빌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능형 건축물 인증 3등급·4등급 -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·2등급 	14	1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단 1회라도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한다.
		15	120	

(이하 생략)

6) 「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·산정 업무요령」 p.52